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22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김문수・박해철・박지원
이광희・민홍철・김 윤
민병덕・이수진・김우영
김남근・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호의”를 “제6호·제6호의2의”로, “절차 및 집행 등에”를 “절차, 집행 및 제6호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에”로 한다.

6의2.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제50조제1항 중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 ---------- ---------- ---------- ---------- ---------- ----------.
1. ~ 6. (생 략)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7. ~ 9.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6호·제6호의2의----------

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절차, 집행 및 제6호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